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기금의 용도 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안 제6조제3항)
 - 여성위원 :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안 제6조제4항)
 - 임기 : 2년, 연임 가능(안 제6조제6항)
- 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안 제8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 시
 -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통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원칙
- 위촉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구)

4. 검토의견(전문위원 : 서 동 근)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통합조례”)가 2003.12.31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 ②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개정한 것은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 ⑤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이 되도록 한다.
-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안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8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안 제8조의2(위촉의 해지)등을 각각 신설 보완한 것은 폐지된 통합조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는 안이며 이는 “내”라 하는 것은 “기간 내에서”처럼 시간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안”이라 하는 것은 “범위 안”에서처럼 면적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치입법편람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도 “내”와 “안”을 모두 구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안 개정안도 이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 ③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안은 “통합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본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 및 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